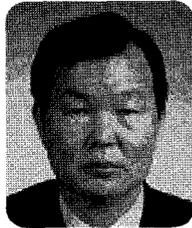


음식점 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의무화의 필요성



남 호 경 회장
축산물관련단체협의회
(전국한우협회 회장)

음식점 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의무화의 필요성

현재 농축산물은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음식점에서는 원산지표시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품질과 가격에 따른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받고, 생산자는 품질에 따른 정당한 가격수취가 불가능하며, 식품의 위해성 발생시 효율적인 원산지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축산물은 전체 소비량 중 음식점 소비 비중이 50%를 넘어설 정도로 유통과정에서 음식점의 비중이 매우 높아 원산지 추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품질에 따른 정당한 가격을

수취할 수 있도록 하며, 도매단계에서 최종 소비단계까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1. 원산지 표시 관련 법 현황

농축산물의 도소매 유통단계 표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다.

가장 기본적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업소 또는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그 원산지를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축산물에 대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에 식육 판매업소에서 수입고기, 국내산고기(한우, 젓소) 등으로 표시·판매하는 한편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은 축산농가 보호는 물론 소비자의 식생활 안전을 통한 건강권 확보를 도모하고 축산물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앞당기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 축산업계와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0여년간 제기해 온 핵심 과제이다.
범국가적인 국민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은 한우고기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모든 축산물에 대하여 이뤄져야 한다.

식육거래기록을 의무적으로 갖춰 놓도록 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 소관인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는 음식점에 대한 표시 규정을 갖춰 놓고 있으나 단순히 식육부위별 중량당 가격만 표시하도록 하고, 음식점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해 놓고 있지 않다.

2.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추진 경과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 논의는 농림부가 96년 7월 보건복지부에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실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미온적 태도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정책적 검토는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99년 6월 다이옥신 파동 관련 대책으로 국회에서 위해 수입축산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음식점원산지표시제도 추진이 발표되면서 관련 부처간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되었다.

농림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를 뒷받침할 실무협의를 거쳐 2000년 3월 쇠고기를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시행시기를 2001년 1월 1일로 하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음식점원산지표시제도는 실시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외교통상부가 WTO관련 통상문제 발생을 이유로 이견을 제출함으로써 정부내 부처간 이견이 노출되었으며, 이후 2000년 4~5월 관련 부처(농림부,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조정을 통해 음식점원산지표시제 도입 추진이 어렵게 결정되었으나, 2000년 6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사회분과위에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 수 없다는 이유로 부결됨으로써 음식점원산지표시제 도입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2003년 4월 국회에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등이 의원입법으로 음식점원산지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논의가 다시 점화되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던 중 2003년 12월 24일 미국 광우병 발생으로 소비자단체까지 가세해 새로운 국면을 형성했다.

2004년 1월부터 음식점원산지표시제 도입은 보건복지부와 농림부의 긴급 현안 정책 과제로 부각되면서 빠르면 2005년 하반기부터 음식점에서 파는 쇠고기에 대해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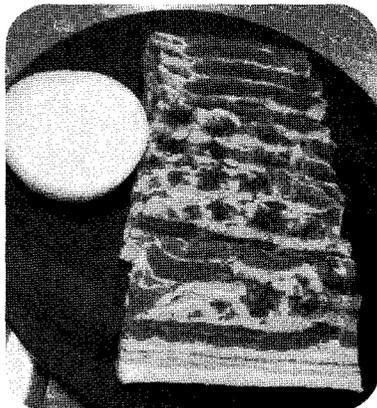
또한 17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음식점 육류 원산지표시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한나라당이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을, 민주노동당이 식품안전법 제정을 각각 제시함으로써 6월부터 시작된 17대 국회에서의 음식점 육류 원산지표시제 도입은 그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인기 의원이 17대 국회 첫 법안으로, 일반 음식점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식품에 수입 고기가 들어갈 경우 이 고기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음식점원산지표시제 도입은 정부와 국회가 함께 추진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3.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주요 내용

2000년도 추진되었던 음식점원산지표시제도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시대상 음식점은 일반 음식점(한식) 중 고기를 전문적으로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품질에 따른 정당한 가격을 수취할 수 있도록 하며, 도매단계에서 최종 소비단계까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다.

문적으로 구워서 판매하는 음식점(8~9만개)로 한정하며, 대상 음식점은 메뉴판에 조리·판매할 육류의 원산지를 「고기부위(국내

산 또는 수입산) ○○그램당 ○○○원」으로 표시토록 규정했다. 또한 표시대상 육류를 쇠고기에 한정하며, 단속권은 시도예, 처벌은 시정명령(1차), 영업정지(2차:7일, 3차:15일), 영업폐쇄(4차)로 규정했었다.

2004년도 들어 농림부와 보건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음식점원산지표시제도는 쇠고기를 제외한 다른 육류(돼지고기, 닭고기 등)는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는데다 소비자 불안도 크지 않다는 판단 하에, 우선 쇠고기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며, 통상 마찰을 막기 위해 음식점에서도 일반 정육점처럼 수입산 외에 국산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구체적인 대상 음식점과 표시 방법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고시로 정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부가 관계 법률인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개정해 식육 판매업자가 음식점에 쇠고기를 납품할 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에 대한 입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금까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초 국무총리실 및 국회에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의무화 시행을 건의했다.

건의문의 주요 골자는 “축산농가 보호와 국민 건강권 및 식생활 증진을 위해 한우고기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모든 축산물에 대하여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의무화를

